

영등포구의회
제189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5. 7. 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70호로 2015년 6월 2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회계관직명 변경(안 제2조제2항)

나. 변경된 범명 정정(안 제2조제2항제4호)

다. 위원의 위촉 해제 요건에 실제 임무수행 가능 여부로 해제

요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개선 (안 제10조제1호)

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안 제1조,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제4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건설기술 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목적’ 규정은 자치법규의 입법목적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것으로써 ‘약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을 각각 “법”과 “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약칭’ 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다음에 오는 본문 조문인 안 제2조제1항, 안 제4조제1항제4호, 안 제6조제1항에서 ‘약칭’을 사용하려는 것으로 적절하게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조 제2항은 2014.5.28.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회계 관계 공무원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담당 공무원의 명칭을 기존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 하려는 것이며,
 - 안 제2조제2항제4호는 2013.5.22.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
- 향후에도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구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령정비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제때에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 간에 상호 모순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가 요구됨.

참 고 자 료

1 지방 재정법

제67조(지출원인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 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14.5.23] [법률 제11794호, 2013.5.22, 전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하여 제명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하며, 세분화된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여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